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의 일부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단서 신설(안 제58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의 일부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에 단서를 신설하여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재생사업지구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인 경우에 한해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전체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에 대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과도한 축소와 지원시설(오피스텔 등)의 무분별한 증가가 우려되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개정 발의된 사항으로,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며, 위임된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7항에 의하여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간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침체된 반월산단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후된 반월산단의 환경개선 등 반월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시점에서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시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심의 생략에 따른 절차 간소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구조고도화사업 중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구역을 용도변경없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상태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편의지원센터(하모니콜) 운영을 일과시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을 연중무휴 운영으로 개선하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수단 이용대상 정비와 함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된 차량외의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모니콜 24시간 운영 관련 근거 일부개정 (안 제7조제2항)
- 임산부, 장애인 이용대상에 대한 관련 근거 일부개정 (안 제11조제1항)
 - ※ 장애인 이용대상자에 대한 상위 법령 변경
 - ※ 임산부 교통편의 정책 추진에 따른 이용대상자 명시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관련 근거 일부개정 (안 제12조제1항)
 - ※ 현재 요금기준에(기본요금1,200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운영 근거 신설 (안 제13조의2)

3.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운영으로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구분을 통한 이용대상 정비와 함께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2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1항1호 및 2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1항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임산부를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신설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등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운영 중인 하모니콜 차량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환경컨설팅 사업 명시, 문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인사·조직
지침 임원의 선임방법, 결격사유 등 반영
- 재단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원 임기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정관 사업 범위 확대(안 제4조)
 - 환경컨설팅 사업 명시, 문구 수정
 - ▶ 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
 - ▶ 12. 환경컨설팅(환경관련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방법 변경(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임원의 선임방법), 해당
인사·조직 지침 반영
-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임원의 결격사유) 반영
- 임원의 임기 변경(안 제9조)

3. 검토의견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4조의 목적사업 대상에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내용은 재단이 보유한 환경전문 인력을 통해 환경컨설팅 기관으로 경기도에 등록하여 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및 재단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보된 인력 활용 측면과 환경 전문기관으로 발전 등의 측면 고려시 궁적적이나,
-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을 위해 공유수면에 위치한 안산환경재단의 사무실 소재지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을 통한 수익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 추진 중이던 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임기)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